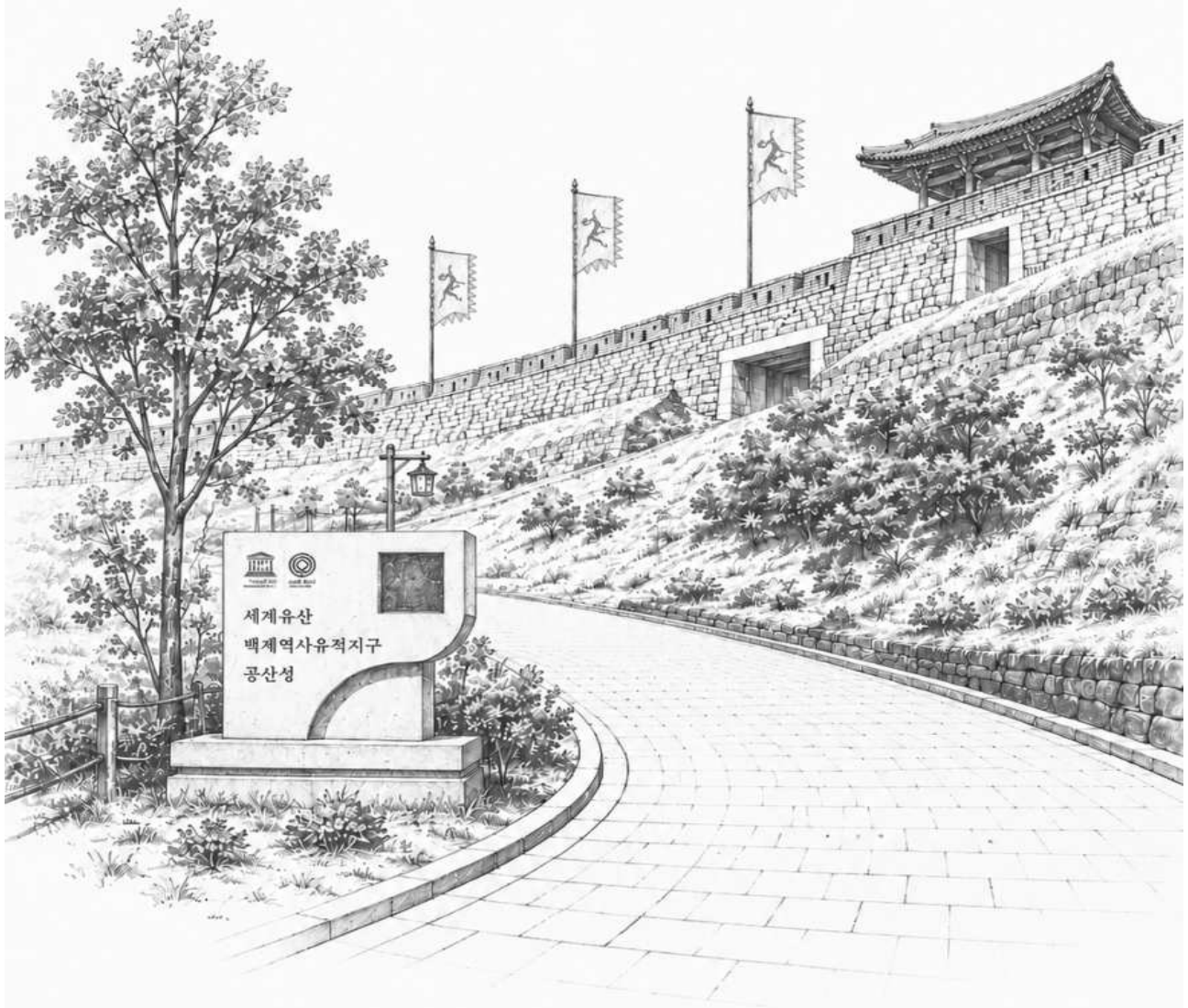


강한공주 행복한시민

공주시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995호 2026. 9. 28.(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산성>



【조 례】

제1982호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
제1983호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5
제1984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제1985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제1986호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	24
제1987호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제1988호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제1989호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제1990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제1991호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제1992호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공 고】

제2026-2613호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0
--	----

【고 시】

제2026-187호 『공주시 상룡리, 어천리, 화현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65
제2026-18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67

【공주시의회】

규칙 제19호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69
규칙 제20호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86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9. 9.)
에서 의결된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 원 철

2026년 9월 28일

공주시 조례 제1982호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제3조제3항의 분과위원회는 5개 이내 분과로 구성
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9. 9.)
에서 의결된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6년 9월 28일

공주시 조례 제1983호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

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시정 현안(시와 관련된 국정·도정과제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시설공사, 전기 및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사
3. 5천만원 이상의 역사·문화·관광행사 및 연구용역 사업
4.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공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공주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등록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내역서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내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이력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2회(상·하반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상황과 정책참여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을 시 누리집에 수정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평가 및 포상) 시장은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에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적용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사항으로 본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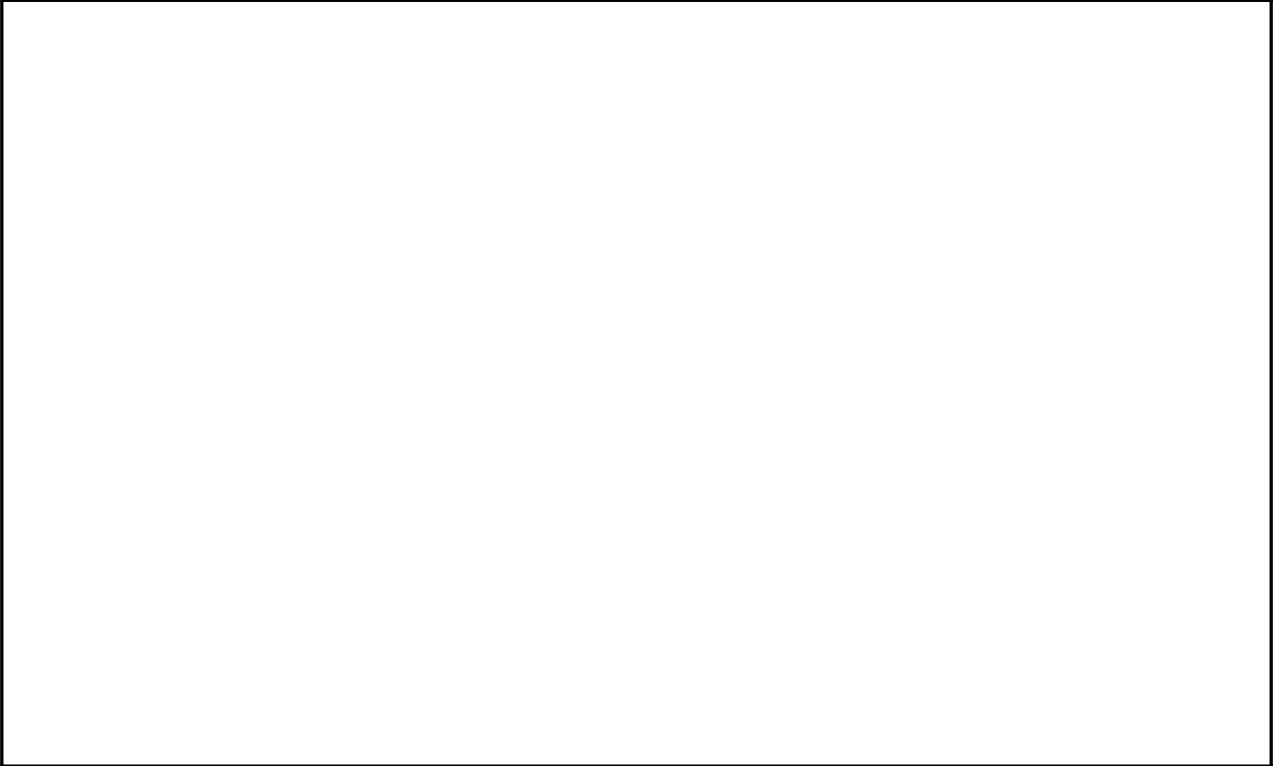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기간		⑤ 추진율	
⑥ 사업부서		⑦ 담당자	
⑧ 선정기준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00.00.00.	○○○ 시장 ○○○ 부시장 ○○○ 국장 ○○○ 부서장 ○○○ 팀장 ○○○ 주무관	
○ 내용	‘00.00.00.	○○○ 부서장 ○○○ 팀장 ○○○ 주무관	

<기재 항목>

- ① 정책사업명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사업명 그대로 기재
-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 ④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⑤ 추진율 : 총 사업(용역)량 중 진행한 양의 비율 기재(방침결재, 설계 등 포함)
- ⑥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실·과 단위) 기재
- ⑦ 담당자 : 현 사업 담당자, 사업 담당 팀장 및 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 ⑧ 선정기준 : 조례 제3조 각 호의 사항 중 선택 기재
 - ※ <주요 추진내용>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완료할 때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의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경로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위치도 및 조감도>

① 위치도



② 조감도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

① 등록번호	② 정책사업명	③ 사업부서	④ 담당자

<기재 항목>

-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26-1, 2026-2)
-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을 기재
-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 ④ 담 당 자 : 사업 담당자, 사업 담당 팀장 및 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9. 9.)
에서 의결된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 원 철

2026년 9월 28일

공주시 조례 제1984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근거로”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7.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란 산업통상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말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한차례**”를 “**두 차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4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개의(開議)
하고**”를 “**개의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기업유치팀장**”을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4. 국내·외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업 유치 성과금에 관한 사항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
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5조제6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4(투자유치자문관 위촉 등) ① 시장은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공주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억원”을 “20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 기업투자유치촉진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기준에 의한다”를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1.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본사·연구소·공장

제7조의4제1항 중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을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 (이 조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른 보조금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지원대상에 대한 보조금 총액은 1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은 시비로 부담한다.

제7조의6 및 제7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6(관광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이 관광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② 관광사업 지원에 따른 보조금은 동일 목적의 국고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의7(교육연수시설 등 지원) 시장은 기업이 교육연수시설(공공연수원, 기업체연수원, 수련시설 등) 투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

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8조제2항제1호 중 “100억원”을 “2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하여 시 기업투자유치촉진”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내국인”을 “시 관할 구역 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1명당”을 “초과인원 1명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7조제5항 중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지원기준」”을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원기준」 제22조”를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9. 9.)
에서 의결된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 원 철

2026년 9월 28일

공주시 조례 제1985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149명이며”를 “1,165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23명”을 “1,139명”으로 한다.

별표 6과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별표 6]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2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 이내	6%이내	28%이내	32%이내	25%이내	7%이상	1%이내

2. 연구직 · 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90% 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이상	6급 ~ 8급상당
비 율	50% 이내	50% 이상

*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165	-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116	-				
3급	1	1				
4급	7(1)	4	1	2(1)		
5급	54	31	2	5	-	16
6급 이하 계	1,054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2	-				
연구직 계	10	-				
연 구 관	-					
연 구 사	10	9		1		
지도직 계	33	-				
지 도 관	3			3		
지 도 사	30			30		
전문경력관 계	2	-				
나군	2	-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9. 9.)
에서 의결된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6년 9월 28일

공주시 조례 제1986호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주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합리적 소비 촉진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배달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주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배달앱

나. 공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 배달앱

2. “가맹점주”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공공배달앱에 입점한 소상공인 사업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공배달앱을 통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배달앱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사업) 시장은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배달앱 홍보 및 마케팅 사업

2. 공공배달앱 이용자 및 가맹점주에 대한 판촉활동 지원사업

3. 캐시백 적립 등 공주사랑 상품권 연계사업

4. 그 밖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약 및 협력) ① 시장은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사업자, 소상공인 단체, 금융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충청남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하여 공공 배달앱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제7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9. 9.)
에서 의결된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 원 철

2026년 9월 28일

공주시 조례 제1987호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제7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지원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지원금은”을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구체적 범위는”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보험료를”을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화재보험료의 일부를 소상공인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화재보험료의 지급 대상, 금액, 범위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정상화자금의 지급 금액,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험료는 정부 두루누리 사업 및 상위 기관 사업지침에 따른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주시 소상공인 연합회”를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의 정관에 근거하여 설치된 관내 소재 공주시 소상공인연합회(공주시 지부)”로, “사업이나 운영”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영활동”을 “경영 활동 및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을 “(공제사업 지원)”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특례보증) ① 시장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특례보증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7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존 위탁 및 출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와 출연한 내용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 및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9. 9.)
에서 의결된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6년 9월 28일

공주시 조례 제1988호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체육시설**”을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체육시설**”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체육활동**”을 “**체육활동(경기연습의 경우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으로 한다.

제24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국가·도 또는 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수탁자는 그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2년간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26조(준용)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9. 9.)
에서 의결된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 원 철

2026년 9월 28일

공주시 조례 제1989호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시(이하“국내·외 도시”라 한다)간”을 “도시 간”으로 한다.

제2조 중 “국내·외 도시간”을 “공주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으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을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을 제의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 시장이”를 “그 밖에 시장이”로 한다.

제5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 중 “국내·외 도시간”을 “국내·외 도시 간”으로, “의결을 얻어야”를 “의결을 받아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노력해야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교류협력사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하거나 미리 승인한 교류협력 일정에 참여할 것
2. 시가 선발하거나 시의 요청 또는 승인을 받아 시의 공식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할 것
3. 교류의 목적과 상대 도시의 공식 초청 또는 사전 협의 사실이 문서

로 확인될 것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의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함께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비 지급등급은 같은 규정 별표 9에 따르되, 같은 표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급등급을 적용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여비 외에 여행자보험료 등 교류협력 일정의 수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 운임·숙박비·식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의 예산으로 따로 지출되거나 상대 도시 등으로부터 직접 제공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 ⑥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목적으로 여비·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⑦ 시장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의 관계자가 시를 공식 방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은 시의 대표단이 그 도시를 방문하였을 때 제공받은 예우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한다.

⑧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매결연 도시의 주민이 공주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공주시의 주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중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류협력사업 참여자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교류협력 일정에 참여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문 관계자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외 도시의 관계자가 최초로 시를 공식 방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9. 9.)
에서 의결된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6년 9월 28일

공주시 조례 제1990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일부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기 허가·신고된 소와 젖소 배출시설을 양(염소, 산양 포함), 사슴, 말로 축종을 변경하거나, 그렇게 변경한 축종을 다시 최초 허가·신고 당시의 축종으로 재전환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축종 변경 또는 재전환 당시의 배출시설 연면적 및 처리용량이 최초에 허가받거나 신고된 연면적 및 처리용량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최초 허가·신고 당시의 축종으로 재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제한거리가 줄어든 축종으로 변경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축종 변경 농가의 재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 또는 젖소에서 양(염소, 산양 포함), 사슴, 말로 축종을 변경하여 사육 중인 경우에도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3항제2호의 “2년이 경과하였을 것”을 적용함에 있어 축종을 변경한 날은 이 조례 시행 전 실제 축종 변경 신고(허가)가 완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9. 9.)
에서 의결된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6년 9월 28일

공주시 조례 제1991호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응급환자의 발생”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응급처치”란”을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7. “응급의료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 인건비
4. 그 밖에 응급의료체계의 유지 및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1호 중 “설치의무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를 “설치의무대상: 법 제47조의2”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공주시”를 “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제3조의

응급의료”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9. 9.)
에서 의결된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 원 철

2026년 9월 28일

공주시 조례 제1992호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2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의사가 생백신 또는 사백신 1차 접종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추가 접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접종종류 및 지원횟수) ①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약독화 생바이러스 백신(이하 “생백신”이라 한다)
2. 대상포진 재조합 백신(이하 “사백신”이라 한다)

②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횟수는 1회로 하되, 사백신은 2회까지 허용할 수 있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을 “시장”으로, “비용을 한 차례만”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

될 경우, 비용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제3조”를 “제4조”로, “신분증과 주민등록 초본을”을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제2호 및 같은 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청통합시스템”을 각각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1. 신분증

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신분 및 지원대상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확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진표를 작성한 사람은 의사의 예진을 받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거주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
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청구서(제4조
관련)”를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청구서(제5조 관련)”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를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청서(제5조 관련)

(접수번호 :)

신 청 인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자택		휴대폰
접 종 구 분	☐ 생백신 ☐ 사백신		
지 원 대 상 확 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주시”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함. ☐ 대상포진 기접종내역이 없음을 확인함. ☐ 기타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위탁의료기관장 귀하			
확 인 사 항	· 주민등록 등·초본 · (해당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해당시)장애인증명서 · (해당시)국가유공자 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예방접종 비용지원 신청 및 지원 대상 확인 ☐ 개인정보수집 항목 : 생년월일,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용 및 보유기간 :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보관 후 폐기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 목적 외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예방접종 비용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위탁의료기관장 귀하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청구서(제5조 관련)

수신인		공주시보건소장	
접종기관명			
전화번호			
입금은행			
입금계좌번호			
청구금액			
품목	접종인원	금액	합계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한 대상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접종기관명) (인)

공주시장 귀하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제7조 관련)

번호	피접종자 인적사항					예방접종 실시 내용				환수금액	환수조치 불가사유
	일자	성명 (성별)	생년 월일	주 소	연락처	백신제조 번 호	접 종 일시	접종자 (성별)	예 진 의사명		

공주시 공고 제2026-2613호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구)「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의 상한치가 법률에 직접 규정됨에 따른 조례 반영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로 변경하여 상위법령 일치화 개정(안 제2조)

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조
례로 위임된 발전설비에 대한 주택, 도로 이격거리 규정 및 이격거
리 예외 발전설비 반영(안 제8조의4)

1) 태양광 발전설비 :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200m

(주택 5호 미만은 이격거리 규제 미적용)

2) 풍력 발전설비

- 주택 이격거리: 1500m 또는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 중
넓은 범위(주택 5호 미만은 이격거리 규제 미적용)

- 도로 이격거리: 500m 또는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 중
넓은 범위

3) 이격거리 적용 예외 :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건축물 위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

다. 에너지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을 “한 차례” 에서 “두 차례” 로
변경(안 제13조)

3. 입법예고기간 : 2026. 9. 23. ~ 10. 13.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공주시장(참조: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경제과(전화: 041-840-83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경제과

-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청, 경제과) / 32552
- 전화: 041-840-8302, 팩스: 041-840-3716, 전자우편: ssukim@korea.kr

5. 참고사항

이 일부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 의 건

입법예고(안)	의 건(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제출처 : 공주시 경제문화국 경제과 (☎ 041-840-8302)

☐ 제출방법 ㄱ 우편: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ㄴ FAX: 041-840-3716, 전자우편 : ssukim@korea.kr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14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25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1항”을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신·재생에너지법”을 “신재생에너지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재생에너지법”을 “신재생에너지법”으로 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등) ① 시장은 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1. 태양광 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

0미터 이내에 주택이 위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해당 이격거리 내에 주택이 5호 미만인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풍력 발전설비

가. 풍력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 또는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 중 넓은 범위 이내에 주택이 위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해당 이격거리 내에 주택이 5호 미만인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풍력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또는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 중 넓은 범위 이내에 도로가 위치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2.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

③ 제1항에 따른 주택, 도로의 기준 및 거리 산정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는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한다.

제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4항 중 “에너지사업팀장”을 “에너지업무 팀장이”로, “에너지지원팀 주무관”을 “에너지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한 차례”를 “두 차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정의) ----- -----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 -----.
제7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생략) ②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7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현행과 같음) ②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 ----- -----. ③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 ----- ---.
제8조의2(공유재산의 임대) ①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제8조의2(공유재산의 임대) ①-- ----- -----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1항----- -----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동의안을 공주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그 밖에 임대에 관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법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신 설>

-----.

② ----- 신재생에너지법 -----

-----.

-----.

③ -----
신재생에너지법 -----

-----.

제8조의4(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등) ① 시장은 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1. 태양광 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터 반경 200미터 이내에 주택
이 위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해당 이격거리 내에 주택이 5
호 미만인 경우에는 이격거리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풍력 발전설비

가. 풍력 발전설비의 부지 경
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
터 또는 해당 발전설비 높
이의 2배 이상 중 넓은 범
위 이내에 주택이 위치하
지 아니할 것. 다만, 해당
이격거리 내에 주택이 5호
미만인 경우에는 이격거리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풍력 발전설비의 부지 경
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
터 또는 해당 발전설비 높
이의 2배 이상 중 넓은 범
위 이내에 도로가 위치하
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
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격
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u>1.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형 발전설비</u> <u>2.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u> <u>3.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u> <u>③ 제1항에 따른 주택, 도로의 기준 및 거리 산정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른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는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한다.</u>
제9조(에너지위원회 설치 등) ① ~ ④ (생략)	제9조(에너지위원회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에너지업무 담당자로 한다.</u>	<u><삭 제></u>
제11조(회의) ① ~ ③ (생략)	제11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u>에너지사업팀장</u> 되고, 서기는 <u>에너지지원팀 주무관</u>으로 한다. 제1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한 차례</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위촉 해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④ ----- ----- --- <u>에너지업무 팀장이</u> ---- --- <u>에너지업무 담당자</u>----- ---. 제13조(임기) ① ----- ----- <u>두 차례</u>----- --. ----- ----- -----. ② (현행과 같음)
--	---

관계법령 발췌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6. 3. 17.>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태양에너지
 - 나. 풍력
 - 다. 수력
 - 라. 해양에너지
 - 마. 지열에너지
 -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재생에너지 설비”란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1.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2.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풍력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가.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까지(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까지(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주시 상룡리, 어천리, 화현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공주시 상룡리, 어천리, 화현리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정안면 상룡리 마을만들기사업, 우성면 어천리 마을만들기사업,
계룡면 화현리 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목적 : 농촌 마을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유지 및 마을 활력, 특화발전 도모
3. 사 업 비 : 마을당 2억원(도 30%, 시 70%)
4. 사업내용
 - 정안면 상룡리 마을만들기사업
 - 지역역량강화 : 상룡 문화 살롱, 상룡 활성화 컨설팅, 사회적 경제 컨설팅
 - 마을 자율 S/W : 글로벌 희망키움, 미래를 선도하는 상룡리, 상룡리 마을만들기 등
 - 우성면 어천리 마을만들기사업

- 지역역량강화 : 여우내 백년대계, 사회적경제 컨설팅 등
- 마을 자율 S/W : 장승문화 축제 운영, 장승제 스토리텔링, 여우내 장승 마을, 조롱박 연구회 등

– 계룡면 화헌리 마을만들기사업

- 지역역량강화 : 화마루 배움터, 화마루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관리 컨설팅 등
- 마을 자율 S/W : 화헌夜행, 화마루 리그 등

5.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6. 사업기간 : 2024년 ~ 2026년(3년)

7. 사업의 효과

- 상룡리는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인과 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하고, 자연환경과 건강·체험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마을 발전 모델 구축
- 어천리는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장승과 장승제를 중심으로 마을의 전통 문화를 이어나가고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마을 조성
- 화헌리는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주민화합과 전통문화 계승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마을경관을 조성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마을 조성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 해당 없음

9. 열람 기간 : 2026. 9. 17. ~ 2026. 10. 2.(16일간)

10. 기타 사항 : 관계서류열람 (공주시청 지역활력과 ☎ 041-840-2364)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 주소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소학동 납다리길 43-2 외 7건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8건)				
변경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0건)				
폐지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0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041-840-825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 2026. 09. 18. >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09. 09.)에서 의결된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의회의장 이 범 수 인

2026년 9월 28일

공주시의회규칙 제19호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기타 공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2조의2(절차의 예외)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공주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⑥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⑧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45일 이전에 공주시의회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지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5항에 따른 환수 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출장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출장보고서를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보고서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

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 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

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누리집 또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직원 보호 등) ① 공주시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 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8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4.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출장의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1.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지?		
	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지?		
	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		
	2. 출장자 중 징계·환수 처분으로 출장제한 사유가 있는지?		
	3.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지?		
	4.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지?		
안전사고 예방 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 ‘아니오’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명	계	체재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5. 출장 주요정보 요약

공무국외출장 주요정보요약		
출장명		
출장자 명단	의원	
	직원	
	기타	
출장기간		
방문국가		
공식방문기관 (접촉자)		
여행경비	체재비	
	준비금	
	항공료	
	차량임차료	
	통역비	
	물품구입	
	기타비용	
	총 계	

비용 상세정보							
총 여행경비 (A+B+C +D+E+F+G)							
체재비 (A=a+b+c)							
	적용환율						
구분(금액)	급지	호수	상한	일수	인원	산출금액	실지금액
일비 (a)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O / X]						
식비 (b)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O / X]						
숙박비 (c)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O / X]						
준비금 (B)	지급사유:				금액:		
항공료 (C)	이용구간:				금액:		
차량임차료 (D)	이용일수: 이용차량:				금액:		
통역비 (E)	이용내역:				금액:		
기념품 등 물품구입 (F)	구입목적: 물 품 명:				금액:		
기타비용 (G)	지급사유:				금액: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 I.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
- II.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 III.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심사위원회에서 기재

--

3. 첨부자료

○ 출장계획서 및 회의록

※ 부결되었다가 재의결된 경우 부결된 심사위의 회의록도 포함

○ 실제 출장 수행 출장 주요정보 요약(별지 제1호서식의 5.활용)

※ 출장자 취소, 현지 일정변경 등에 따른 출장, 비용 변동을 반영

○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

※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합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개별 의원별 보고서를 포함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09. 09.)에서 의결된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주시의회의장 이 범 수 인

2026년 9월 28일

공주시의회규칙 제20호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되

는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회 개최의 통지) 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위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 이를 통지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언 또는 변명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윤리특별위원회 출석요구서

윤리특별위원회 출석요구서		
수 신 : 귀하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1. 출석대상의원	성 명	
	소 속 위원회	
2. 출석이유		
3. 출석일시		
4. 출석장소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		
유의사항	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윤리특별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발언(해명) · 대리발언(해명) 신청서

발언(해명) · 대리발언(해명) 신청서		
1. 발언(해명)건명		
2. 발언(해명)의원	성 명	
	소속위원회	
3. 발언(해명)신청인	성 명	
	소 속	
	심사대상 의원과의 관계	
4. 발언(해명) 내용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해명) · 대리발언(해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		



선 람	기관위원장

회 람						

발행 : 공주시 편집 : 홍보미디어실 ☎ 041-840-8464
 우)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